

# 5大그룹 非業務用땅 2%아닌 18.2%

5大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현황 <단위: 천평, 억원>

그룹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현대	30,016	25,166	1,517	1,560	5.0	5.0	6.2	6.2
삼성	10,554	10,762	1,979	815	18.7	18.7	4.4	4.4
SK	7,274	10,968	1,569	240	21.8	21.8	1.1	1.1
대우	4,859	14,602	434	181	8.9	8.9	1.1	1.1
기타	7,469	4,428	5,462	503	73.1	73.1	4.3	4.3
합계	60,182	76,926	10,961	3,299	18.2	18.2	4.3	4.3

3월 말 기준 5大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현황은 전월 대비 1.1% 증가한 60,182천평, 76,92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 증가한 60,182천평, 76,92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 증가한 60,182천평, 76,926억 원에 달했다.

5大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현황 <단위: 천평, 억원>

현대 546萬평  
現代 198萬평  
SK 157萬평  
三星 152萬평  
大宇 43萬평

## 銀行감독원 발표규모의 9배

千96萬평... 장부價額으로 3千3百億원

국세청

구분	면적(천평)	금액(억원)
비업무용부동산	60,182	76,926
업무용부동산	1,517	1,560
합계	61,699	78,486

### 재벌 부동산 5百여萬坪

# 업무용이론 위장

평민서 실패조사

비업무용부동산의 위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5大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전월 대비 1.1% 증가한 60,182천평, 76,92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 증가한 60,182천평, 76,926억 원에 달했다.

동아 90.6.15

## 法人비업무용땅 18,000坪 적발

취득세 20億원 추징

비업무용부동산의 위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5大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전월 대비 1.1% 증가한 60,182천평, 76,92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 증가한 60,182천평, 76,926억 원에 달했다.

동아 90.6.18

동아 90.6.25



# “서울시, 87년 대통령선거 때 구청장·통장 거액 지급 확인”

20억원 상당 이감사관 주장 신빙성 높아져  
1990. 6. 26 이해찬 의원 폭로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시가 산하 17개 구청장들에게 12억원, 통장들에게 8억3천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해찬 의원(평민)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이로 미루어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밝

힌 ‘서울시 예산 88억원의 선거자금 연태지출’은 매우 신빙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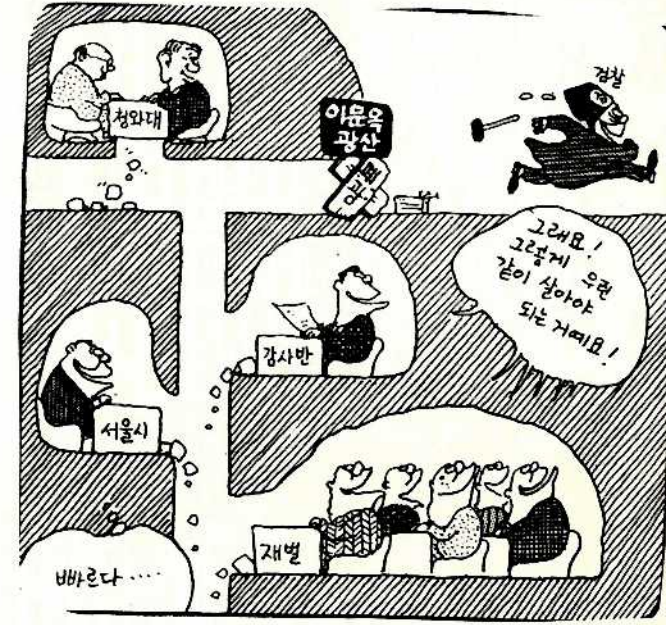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87년 11월 28일 ‘환경정화사업비’ 28억원 중 12억원을 ‘월동기 저소득시민 생계보호’ 명목으로 전용, 시내 17개 구청장들에게 5천만~1억원씩 지급했다는 것이다. 환경정화사업 예산은 86, 88년엔

각각 1억4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유독 87년에는 28억원이 책정돼 있어 선거에 대비한 위장편성 예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전용된 환경정화사업비 12억원 가운데 7억6천만 원이 엉뚱하게 ‘정보비’로 지출됐는데도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임의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고 지적하고 “감사는 서울시 편계사를 조사한 뒤 그것이 특별한 지출이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로 서울시의 87, 88년 예산서와 87년 결산서 사본을 공개했다.

한겨레  
90. 6. 26



## 6. 검찰 수사결과 발표

#수사결과 발표 내용  
#수사결과 발표 안팎



# 진실규명보다 공소유지 초점

이 감사관 검찰조사 의혹 불려

이문옥 감사관의 법정진술내용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사 발표는 그 신뢰도에 상당한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 검찰은 이 조사와 관련 감사관 전 사무총장 안경상 씨 등 전·현직 감사관 간부, 서울시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고 이 감사관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직접 대질신문을 벌였다고 밝혀 조사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번번히 반박해오던 의문점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우선 80년 부정축재자 환수제안 처리에 관한 의혹이다. 당초 이 감사관은 89년 2월 환수제안 중 21억원이 근거가 없어 사라진 것을 확인했으나 나중에 국정감사에서는 평가차액이 난 것으로 어류적 넘어갔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검찰발표는 감사관이 당

시 국방부에 정밀조사해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1년이 지난 지난 달 23일 국방부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 금액은 환수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5억2천여만원을 반환하는 등 위법처리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감사관의 진술과 검찰의 발표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 감사관은 21억원이 증발했는데도 감사원이 국방부를 감사하지 못하고 평가차액으로 처리했다는 데 있어 검찰의 발표대로 국방부가 1년이 지난 다음에 감사원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했다면 그 결과 누가 믿겠는가. 문제는 감사원이 국방부의 처리결과를 직접 감사하지 못하고 국방부에 이를 위임한 데 있으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려면 국방부의 처리결과가 과연 사실인

가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도 가족에게 되돌려준 액수가 5억2천만원, 환수제안의 소재불명으로 미환수된 액수가 14억3천만원, 평가차액 2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21억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선경그룹에 대한 법인세 처리에도 의혹이 있다. 이 감사관은 선경그룹의 법인세 12억원이 누락된 것을 밝혀내기도 이 그룹의 최정현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반면 검찰은 감사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검토결과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주)선경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회사인 SKI(선경 인더스트리) 등에 86~88 사업연도중 48억~

이 금액 만큼 액수가 많아 국제적인 제반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를 미루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또한 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시인하고 빠른 시일 안에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예산 88억원용 선서사금으로 반대지출했다는 이 감사관의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감사관이 감사 당시 정보비 7억원, 관공비 20억원, 보상금 52억원의 지출내역을 조사하자고 했으나 수석감사관이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정보비와 관공비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보상금만 감사한 결과 공판정액의 52%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적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 간부로부터 돈을 들었다는 부분과 관련, 이

부정축재 재산환수 **국방부 차액해명 신빙성 의문**  
 선경그룹의 법인세 **비과세 판정 정실개입 가능성**  
 현대그룹 과세보류 **'물타기' 불로소득 제재했어야**  
 시예산 선거예전용 **'주요사업비' 급증 국회도 지적**

65억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했다. 은행대출금과 다른 회사에 대여할 때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법인세법은 당초 은행대출을 받은 (주)선경에 대해 은행이자소득으로 처리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선경은 이 중 일부를 자회사에 대해 해주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손배채택을 받을 수 없다. 그 금액이 23억원이고 이에 대한 법인세가 12억원이다.

그러나 국제청은 SKI가 (주)선경의 자회사이지만 대비 상종수출의 창구이기 때문에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과세하지 않았다. 국제청의 이같은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따라서 여기에는 선경이 노태우 대통령의 인척회사라는 '정실'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그룹의 자본거래칙의 2천5백억원에 대한 과세 보류도 의심을 받을 만하다. 제법그룹의 이른바 '물타기' 중자로 인한 불로소득은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비단 현대그룹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청은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법적적합한 방안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과세를 미뤘다. 현대그룹도 88년 11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으나 감사원은 지금까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감사관의 지적이다. 불상 자본거래로 인한 불로소득과세는 1천억원대

감사관과 당시 서울시 간부를 대질신문한 결과 이 간부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 중 정보비, 관공비, 보상금이 서울시 내부에서는 주요사업비로 분류돼 선거 때 갑자기 늘어나면서 선거와 관련된 선심사업에 쓰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애초부터 소극적이었다. 검찰은 진술내용이 수사할 만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면 '공소유지'를 위한 사실확인이라고 그 성격을 못박았다.

또 선선서류를 정밀조치하지 않고 감사원 관계자 등을 불러 진술만 들음으로써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을 부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혹을 면할 수 없다. 검찰수사 결과 발표내용은 감사원이 이날 낮 앞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해명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 데서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당초부터 감사원이 자체처리하지 않고 검찰로 이 감사관을 넘기는 바람에 일관된 부담을 안았다는 불만을 드러내었다.

검찰은 일단 조사금 규범으로써 얼마만큼 부당해석 했었는지를 했지만 오히려 실추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받들, 진상을 거머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겨레 90.5.26

세계일보 90.5.27

전세입자의 지위 보호... (前) 감사관 전격기소 파문 조기鎮火 의혹

## 李前감사관 전격기소 파문 조기鎮火 의혹

전세입자의 지위 보호... (前) 감사관 전격기소 파문 조기鎮火 의혹

전세입자의 지위 보호... (前) 감사관 전격기소 파문 조기鎮火 의혹



생수시판 허용문제 싸고 保社部 골머리

생수시판 허용문제 싸고 保社部 골머리... (前) 감사관 전격기소 파문 조기鎮火 의혹

생수시판 허용문제 싸고 保社部 골머리... (前) 감사관 전격기소 파문 조기鎮火 의혹

이문옥 감사관의 법정진술은 우리 사회 권력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부정이 폭로된 것으로서 실로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원 정부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고 공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청와대에 투명사정판까지 설치하여 사정물품을 일으키고 있는 때여서 이같은 폭로내용의 영향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 중에서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와 88년 국회의원선거 때 서울시가 시 예산에서 88억원을 정보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선거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 청와대측이 압력을 넣어 감사가 중단된 사실 등은 현 정부에 의하여 이미 청산되었다고 공언된 5공비리의 재판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극히 형식적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법정진술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러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이 관계자를 소환한다고 하여 '혹시나'하고 기대하였다고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고 '역시나'하고 또 한번 실망하였을 것이다. 검찰이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에 두가지 정도이다.

첫째, 이 감사관의 진술은 평소 대기업

에 대한 과잉감시를 하여 물의를 빚은 이 감사관이 승진에 있어 수차례에 걸쳐 탈락된 뒤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늘어놓은 상투적인 '구속피의자의 변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감사관이 30년 감시관 경력에 있어 수차례에 걸쳐 탈락된 뒤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늘어놓은 상투적인 '구속피의자의 변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감사관이 30년 감시관 경력에 있어 수차례에 걸쳐 탈락된 뒤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늘어놓은 상투적인 '구속피의자의 변명'이라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때 이 문제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된 바 없으며, 예산선용이 선거법 위반의 측면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의 형평 또는 배임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예산선용이 단순한 예산선용의 진위와 예산의 선지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현행법이나 대



## 이문옥 감사관 진술과 검찰의 '변명'

영 남 유

더구나 검찰은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관 직원 등 18명을 소환 조사하였는데, 그 기간은 불과 2일밖에 되지 않는다. 관련자 소환을 최대로 줄이고 관계서류에 대한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한 2일간의 형식적인 수사는 아닌 것이다. 서울시의 예산선용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미 지적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하는 검찰의 판단은 현 정권의 한 부서에 불과한 검찰의 공백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은 현 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나아가 6공비리에 대한 청산의 문제가 목전에 임박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비리가 검찰에 의하여 조사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헌법상의 필수적인 기관인 감사원이 청와대와 체벌쪽의 로비에 의하여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정이 이렇다면 제도적으로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의 진위를 확인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밖에 없다. 즉 행정부 안의 최고통계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직접 나서서 확인조사하여 그 대체를 수립하는 길만이 현 정부를 위하여도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정부는 정권이 부친경찰서 성고문사건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진상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변호사>

한겨레 90.5.29

## 이 감사관과 검찰, 누가 '거짓'인가?

민자당 정권의 도덕성을 용기와 결단으로 심판한 이문옥 감사관은 지금 양심적 공무원의 사표가 되어 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 24일 그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데 이어 검찰은 서둘러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감사관이 구속적부심의 심문과정에서 밝힌 8가지의 비리사태는 "사실과 다름이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수사종결을 선언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야당은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주장하고 있고 많은 사회단체들은 이 감사관 석방운동을 펴면서 그가 밝힌 비리내용에 대한 정밀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단 하루만에 이 감사관에 대한 철야 조사와 18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8가지의 비리' 폭로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황급하게 조사를 마친 까닭은 무엇인가? 심의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일까? 당초 검찰은 이 감사관의 구속 이유가 된 제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 '누설'이 허위라고 발표하면서 그가 무슨 계주로 8일 만에 제벌의 방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대중이 검찰에 되물을 차례이다. 검찰은 무슨 계주로 단 하루만에 서울시 예산 집행의 의혹에서부터 선경그룹과 삼성생명보험 등의 법인세 누락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었는가?

더구나 검찰이 불러 조사를 받았다는 '참고인들'은 대부분이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이거나 회사 직원들 또는 감사원의 감사관들이었다. 검찰이 이 감사관을 구속하겠다고 약속했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몇사람을 불러 조사하고서는 이 감사관의 모든 진술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그 발표를 믿겠는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이문옥 감사관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87년 11월23일,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주요사업비'란 이름으로 49억원 가량의 자금을 긴급조성한 예산문서가 보도되었는가 하면 삼성그룹의 중앙개발이 보유한 안양광프장이 비업무용 토지로 뒤늦게 판정되어 법인세 등이 부과된 사실이 새로이 알려졌으며 현대그룹이 회사 합병 때 얻은 거래차의 역시 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모든 비리에 관한 진실을 밝혀낼 자격도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청와대 특별사정반이 조사를 맡아야 할까? 그러나 이 감사관이 폭로한 감사중단 명령은 바로 청와대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민자당이 주장하듯이 국회 법사위에 이 문제를 넘길 것인가? 민자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법사위가 성의있는 작업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감사관이 폭로한 내용은 '5공'의 비리가 아니라 바로 6공의 비리이다. 그것은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부정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우리는 5공비리를 밝히기 위해 통상적 수사기관이 아니라 절대로 독립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특별검찰부나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야말로 비상한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다. 정부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감사관의 폭로를 덮어두는데 급급한다면 정부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한겨레 9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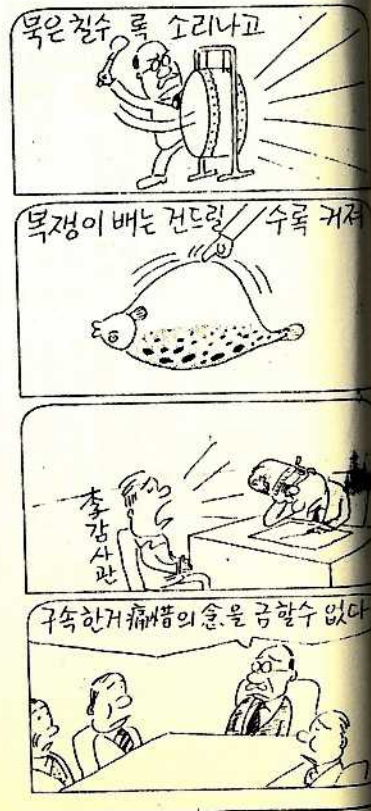
# 이감사관 보고서 변조 가능성

이문옥씨, 변호인단에 밝혀 “검찰제시 자료 원본과 달라”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제출할 때 만들었던 채벌그림 소유 기업무용 부동산신탁 감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명기 조승형 의원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면담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낸 선경그룹 관련 중간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등 채벌기업에 대한 감사를 단행 진행하고 있을 때

사무총장이 갑자기 감사중단 지시를 내려 이 사실을 자료에 남길 목적으로 사인권으로 ‘총장지시’라고 써 놓았었는데 이같은 표시가 사라져버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 등이 전했다. 이 감사관은 이밖에 연소자에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를 규명키 위해 삼성생명 등의 경우는 보편관계를, 대우그룹의 경우는 증권관계를 조사했으나 감사원 사무차장만 결재하고 사무총장은 결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침, 감사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한겨레 90.5.31



## 7.이문옥 감사관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사회단체, 야당 석방촉구대회 관련 기사





# 이감사관 석방 서명운동 전민련 대한변협 정부에 공개 진상규명 촉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고다공원앞에서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시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전민련은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이 감사관의 구속은 현정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재벌들의 이익만을 감싸고 도는 부정·부패한 정권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이감사관 석방 △재벌 토지보유실태에 대한 전면공개 등을 촉구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승서)는 이날 이문옥 감사관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는 이씨가 법정에서 밝힌 감사원과 행정기관의 비리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의 해명이나 수사 또는 조사의 이름을 빌려 사실을 호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의 수사력과 국정감사·조사 기능을 망라해 공개리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감사관의 즉각 석방과 명예회복 등

한겨레 90.5.21

## 여야, 감사비리 규명 이견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문제와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비리폭로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쪽의 의견이 맞서 결렬됐다.

## "이문옥 감사관 석방

## 청와대 회담때 요구"

김대중 평민총재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5일 이문옥 감사관 문제와 관련, 오는

29일 청와대 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감사관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실련, 내달 2일 시민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촉구 시민대회 및 양심의 행진'을 오는 6월2일 서울 파고다공원과 대구 YMCA 강당에서 동시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90.5.26

국민연합 시민서명운동에  
K N C C C 대표인근  
전민련은 26일 오후 1시부  
또 서울파고다공원앞에서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유인물을 배포했다.  
전민련은 시민들에게 배포  
유인물을 통해 "이 감사관의  
구속은 현정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재벌들의 이익  
만을 감싸고 도는 부정·부  
패한 정권임을 분명히 드러  
냈다"며 △이감사관 석방  
△재벌 토지보유실태에 대  
한 전면공개 등을 촉구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승서)는 이날 이문옥 감  
사관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는 이씨가 법정  
에서 밝힌 감사원과 행정기  
관의 비리 사실에 대해 관  
계기관의 해명이나 수사  
또는 조사의 이름을 빌려 사  
실을 호도하는 우를 범해  
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  
부의 수사력과 국정감사·  
조사 기능을 망라해 공개  
리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감사관의 즉각 석  
방과 명예회복 등을

동아 90.5.26



# 이감사관 석방 시민서명운동 전민련 재벌 토지보유 실태 공개 촉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고다공원앞에서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시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전민련은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이 감사관의 구속은 현정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재벌들의 이익만을 감싸고 도는 부정·부패한 정권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이감사관 석방 △재벌 토지보유실태에 대한 전면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승서)는 26일 이문옥 감사관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는 이씨가 법정에서 밝힌 감사원과 행정기관의 비리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의 해명이나 수사 또는 조사의 이름을 빌려 사실을 호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의 수사력과 국정감사·조사 기능을 망라해 공개리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감사관의 즉각 석방과 명

예회복 등을 촉구했다.

## 경찰관 뺨때린 카페여주인

## 영장기각에 혐의추가 구속

삼야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카페 여주인에 대해 경찰이 11일 만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 신정경찰서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3동 620 '두불'카페 주인 정은자(40·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밤 0시50분께 삼야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 2명 중 1명에게 뺨을 때렸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항의하다가 저지른 일로 정상을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11일 만인 이날 정씨가 유흥접객업소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술 등을

팔았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뒤늦게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복성 구속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겨레 90.5.27

# 이문옥 감사관 즉각 석방 촉구

경실련주최 시민대회 부인 "뜻뜻하게 대처" 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공동의장 변형운 교수 등 4명)은 2일 오후 서울과 대구에서 시민 1천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 촉구 제2차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는 양심적인 공직자상의 표본인 이 감사관을 무조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비폭력·평화·합법운동의 원칙 아래 이 감사관 석방을 위한 시민연대기구를 구성할 것을 각 사회단체에 제의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파고다공원에서 열린 서울대회의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정조사권 발동, 정보공개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고다공원에서 명동성당 앞까지 2km가량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벌였다. 경

실련은 지난 28일 서울시경에 집회신고를 제출해 경찰이 이날 거리행진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이 감사관의 부인인 최중숙(46)씨가 참석, "그동안 여러분이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어렵고 괴롭지만 뜻뜻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에선 시민 3백여명이 이날 오후 3시 대구 YMCA강당에서 시민대회를 가졌다.

한겨레 90.6.3

## '이 감사관 석방하라'는 국민의 소리

이문옥 감사관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오후 서울과 대구에서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 촉구 제2차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는 양심적인 공직자상의 표본인 이 감사관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이 감사관 석방을 위한 시민연대기구도 구성하자고 사회단체들에 제의하는 한편, 국정조사권 발동과 정보공개법 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에 대한 감사가 인계의 로비에 밀려 중단된 것으로 조사된 뒤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사실을 지난 5월11일자 <한겨레신문>에 폭로한 이 감사관은 5월12일자에는 지난해 5월 은행감독원이 공식 발표한 30대 제반 5백20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1.2%인데 반해 자신이 조사한 23개 기업 소유 토지 중 비업무용이 43%로 추정된다고 밝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 감사관의 폭로에 따라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소리가 높아지자 김창은 지난날 15일 그 큰 진격 구축했다. 이 감사관이 공무원상의 비밀을 '누설'하여 감사원과 은행감독원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혐의이다. 김창은 이 감사관이 주장한 8가지 비리사태에 대해 단 하루만에 18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는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며 황급히 수사를 종결했다.

이 감사관의 구속에 대해 민주계와 하계에서는 "국가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는 공직자의 의무"이며 그런 공직자를 구속하는 것은 '국민의 안 권리'와 인본사유를 침해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김창이 그를 구속하면서 "이 감사관이 14일간의 짧은 기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부실하다"고 주장했음에도 정작 김창은 "18명이나 되는 참고인들을 단 하루동안 조사하고 수사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또한 정부가 지금

의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면서 그 주변 가운데 하나로 제법들의 망무기를 지켜보면서 그런 땅의 일부를 관도록 중용했음에도 제법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 감사 결과를 밝힌 이 감사관을 구속한 것은 감정적인 보복이거나 제법들의 토지투기 억제 자체가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 감사관은 또한 구속적부심에서 "서울시가 87년 대통령선거와 88년 총선에서 88억원의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고 폭로하고 88억 원 중 수도방위사령관과 시경국장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주었으며 71억원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87년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주요 사업비' 명목으로 49억원 가량의 자금을 긴급 조성한 예산문서가 밝혀져 이 감사관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이 감사관이 주장한대로 삼성그룹의 중앙개발이 보유한 안양골프장도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과 현대그룹이 회사 합병 때 생긴 거래차액 역시 전실임이 드러났다. 62년 총무처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이 감사관은 30년 가까이 종로구 명륜동 산책대기 집에서 이렇게 지냈으며 지금 살고 있는 공무원아파트도 88년에 1천만원의 은행융자만 얻어 가까스로 장만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동료와 후배들은 평소 술·담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이 감사관이 제법들의 잦은 유흥을 물리치면서 공직자의 절도를 뜻깊이 길이 왔다고 내외를 위한 그의 '살신성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이 감사관을 무조건 석방하고 국회는 이 감사관이 주장하는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강경대응만을 고집하면 비탈을 내려가는 자전기처럼 되어 버릴 것이다.

한겨레 90.6.5

# 李文玉 감사관 석방 촉구대회

국민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합(민중총동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이문옥 감사관 석방 촉구 제2차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는 양심적인 공직자상의 표본인 이 감사관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 감사관의 부인인 최중숙(46)씨가 참석, "그동안 여러분이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어렵고 괴롭지만 뜻뜻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에선 시민 3백여명이 이날 오후 3시 대구 YMCA강당에서 시민대회를 가졌다.

다. 국민연합 3층에서 개최된 이날 집회에는 이문옥 감사관의 부인인 최중숙(46)씨가 참석, "그동안 여러분이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어렵고 괴롭지만 뜻뜻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동아 90.6.7



구급중인 이문옥 감사관의 부인 최중숙(46·오른쪽)씨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이문옥 감사관 석방 촉구대회'에서 '용감한 공무원상'을 남편 대신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기사 15면> <이종찬 기자>

90.6.8

# '감사원 비리' 국조권 요구

## 야권 대회 "이문옥씨 석방·진상규명을"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 구속 진상규명 및 석방추구대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강당에서 평민당·민주당(가칭) 및 국민연합 주최로 시민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 "정당한 양심에 입각해 행동한 이 감사관을 구속한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위주 경제정책의 허상을 감추려는 의도이며 동시에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이문옥 감사관의 구속 진상규명과 재벌투기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스이 감사관 석방 및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스부동산투기 신고센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스이 감사관 지지 도급운동에 적극 동

참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YW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씨를 즉각 석방·원직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겨레 90. 6. 8

### 8. 감사원 반응

#이문옥 감사관

폭로 내용에 대한 감사원 해명

#여론 동향

**이감사관주장 사실과 달라  
감사원 해명**

감사원은 25일 구속중인 이문옥(50) 감사관이 폭로한 감사원 비리사실 7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87, 88년 선거경비로 88억원을 집행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 감사를 중단한 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은 감사 당시(88년 11월21일~12월10일)에는 전혀 보고된 바 없었으며 이 감사관이 감사를 마치면서 위공비 정보비 보정금 등으로 지출된 80억 원에 대한 감사를 비리사실이라고 보고했으나 감사가치가 없이 보고해서 제외된 일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파세상태 감사도 로비 때문에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90. 5. 26

# 이문옥감사관 중징계 요구

**감사원 총무처에**

감사원이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상태를 언론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총무처에 요구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로는 파면과 해임의 두가지가 있으나 이 감사관에 대해서는 파면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중징계 요구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이 감사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 90. 5. 30

**비업무용 不動産 비율 차이  
본석대상企業 달랐기 때문** — 감사원

감사원은 25일 감사자료유출로 구속된 추文玉씨 사건과 관련하여 추씨가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전액 차지하고 있다는 실례를 지적해 8월16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평균 1.2%인 데 비해 추씨의 43.3%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추씨가 주장한데 대해 "현행 추씨가 주장한 30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 부채잔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평균 1.2%인 반면 5백만 원 이상인 기업은 평균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90. 5. 26

## 민자 단독 법사위간담회 안팎

이문옥 감사관의 범정진술을 다루기 위해 30일 소집된 국회 법사위는 야당쪽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면서 불참하는 바람에 민자당 의원들만이 참석, 이문옥 감사관이 폭로한 '감사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일방적인 '해명'의 마당'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듯 30여명의 보도진이 몰려들었으나 감사원에 '면죄부'를 받부해 주는 형식적인 회의로 끝났다.

민자당도 법사위 소속 총 13명의 의원 중 8명만 참석했고 일부 의원은 회의장 밖에 앉아 있거나 회의장 안에서 조는 등 뻘뻘한 분위기여서 '감사비리' 추궁에는 이에 뜻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이치호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 "야당 단독회의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야의 입장이 달라 부득이 간담회로 바꿔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이 많은 의문유 사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진상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해소하는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

◇...이에 김영준 감사원장은 "지각없는 직원 한명이 외부에 알려서는 안되는 내부 문서를 언론사에 알리고 감사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 마쳐 감사원이

외부압력에 의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처럼 주장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오늘 오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환옥 감사원 사무총장이 미리 준비한 해명자료를 낭독한 뒤 일문일답에 들어갔는데 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따지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감사원의

### "이문옥씨 사건 궁금증이나 풀자" 감사원 일방 해명...본질질문 없어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간담회에서 김영준 감사원장이 '이문옥 감사관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한겨레 90.5.31

해명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듯한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답이 이어졌다.

"일반 공무원의 범칙은 검찰 수사가 있기 전에 자체 기관에서 과민해 구속을 면해주는 게 상례인데 이렇게 구속까지 됐다"는 질문에 대해 김 감사원장은 "자체 조사과정에서 이 감사관의 태도가 징상참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대답하는 등 이 감사관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으며 감사원쪽의 의원을 모두 이 감사관의 호칭을 '이문옥'이라고 했다.

<유종필 기자>

# 한겨레신문 수색 요청

## 감사원서 검찰에 이감사관 제보자료 압수위해

### 검찰, 여론 비난 우려 거부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제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자료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사실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의 자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던 사실이 8일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은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처사여서 앞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감사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이 있는 뒤인 지난달 말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 감사관이 체보했던 감사자료를 다시 찾아주도록 대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요청은 이 감사관이 <한겨레신문>에 제공한 자료가 제벌기업의 비업무용 부

동산 실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료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자료가 공개될 경우 또다른 파문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대검은 압수수색의 타당성·적법성 등을 검토했으나 언론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 언론자유 침해라는 여론의 비

난을 받을 것을 우려, 이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찰에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겨레 90.6.9

# 외풍시비 감사원 '홀로서기' 한목소리

'적부상 비열'로 구속된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 사건이 불로 파장을 더해가면서 이번 기회로 감사원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감사관 사건은 논의의 초점은 감사원법 개정 논의의 초점이 있었으나 정부의 목적과 성격상 엄중한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사원이 권력의 금박의 의외에 의해 본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이 시기부터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 한정되고 그 이후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국정감사기능을 넘겨받을 필요할 때면 언제든 조사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이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개입되기 위해서만 감사원법뿐 아니라 헌법, 국회의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도 아울러 고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거대여당 구조 속에서는 실현성이 거의 희박하다. 어쩔 수 없이 아편은 이문옥 감사관 문제를 오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쟁점화하면서 정법개정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기획진 기자>

# '대통령 소속' 범조항 독립성 저해

## 입법부 소속·제4부 독립 택일 마땅 원장·위원 임기 임명권자보다 길어야

와달다는 사실 입법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감사원은 입법부에 속하거나 또는 분리·독립된 제4부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이 조직, 예산, 인사 등 각 부문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종속되다시피 한 감사원으로서는 공정하고 독립된 조사활동에 임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학계에서도 일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감사하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원(GAO)'이 의회에 소속돼 있고 대만은 '감사원'이 입법원 사법원

사무처로 조직된다"는 감사원법 3조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재야 진보계에서는 이 조항이 사무처로 하여금 원장간찰 및 감사감독하에 서무·회계·감사·관할 및 인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하고 있어 외부의 압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연으로 구성된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독립성 저해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주요변수라 할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감사원 예산은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법 예산회계법 22조는 "국회, 대법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독립 기관의 세출에 관하여 그 예산에 용 요구보다 삭감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기타 담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구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예산 제출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입법부·사법부의 예산까지도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감사원에 대한 예산 통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스타엘의 경우 국회 재무위가 감사원 예산을 결

한겨레 90.5.29

# 공복으로서의 신의 고백

이문옥 감사관의 제보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감사원이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며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감사원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근본적으로 깊이된 문제가 벗어날 수 없다.

민지 우리는 제법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자료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고 해서 20년 이상 근무해온 보부상부원을 공무상의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당국의 처사가 대단히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이 감사관이 언론기관의 공익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공익을 도모하려는 자발적인 의

당시 언론과 학계의 여론은 여 사무관이 취재협력의 정당행위를 다루지 않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꾸짖은 바 있음을 여기서 한번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의 일부 수치가 실제로도 과장되었다는 것도 그가 현실적인 악의를 갖고 조작했다는



# 감사원의 시대착오적 '비밀주의'

증가가 있는 이상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여론계 반응의 의제로 선정되어서도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적 여론형성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필수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에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며 그 공간으로 얼마쯤의 오류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실리먼 사건 이후의 선진국이다. 이 감사관 사건은 그 통계를 기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진실 앞에 뒤흔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니 <한겨레신문>의 니시야마 기사는 외부부의 여사사부관을 유혹한 뒤 미국과 일본간의 국가 기밀인 오키나와 반환의 관련 서류를 압수해서 특종보도를 했으나 기소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기사는 11신에서 부위를 신도받았으나(최종심에서 취재의 방법이 지나친 것이냐 아니냐의 '상당성' 논란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지만) 하나) 이사부관은 공무상의 비밀누설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는 것은 언론자유와 주요과정인 편집권에 대해 외부적 강제력을 동원해 탄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공적 관심사는 덮어두고

셋째, 문제의 자료는 제법의 부도덕한 토지투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오히려 그 시시비비가 활발한 공적 토론에 맡기자 하기에 불구하고 제법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감동을 조정하고 개혁을 창출해야 한 정부가 공적인 관심사를 덮어부기나 제법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일반의 비난을 사초한 것이므로 통치술로 보아도 지나친 악수다.

이민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의 효율적인 도구요 가장 확실한 전라이 자유언론의 수호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 사태를 나의 일치된 지켜보면서 자유언론의 현상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감사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개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교수·언론학>

한겨레 90.6.13

## 9.보석 관련 내용

#보석청구 관련 기사

#사설

#석방

# 李文玉감사관 保釋결정

서울刑事地法 "도주 증거인멸 우려없다"

檢察 즉시 抗告 바로 釋放 안 돼



李文玉감사관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서울 刑地法 判 抗告 안 돼

## 李文玉씨 보석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김현철(김)시안 김

중앙 90. 6.30

90. 6.30 동아

90. 중앙 6.9

## 李文玉씨 保釈 신청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유죄판결한 감사장관들을 영예로

조선 6.9

90. 한겨레 6.9

## 이문옥 감사관 보석신청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언론에 공개해 공무상 비  
 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사  
 원 감사관 이문옥(50)씨의 변호  
 를 맡은 박인제 변호사 등 20명  
 의 변호인단은 8일 이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담당재판부인 서울형  
 사지법 최춘근 판사에게 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일정  
 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  
 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  
 단 결정과 국가조세권 발동의 필  
 수자료로 일반에 공개됨으로 해  
 서 정부·행정기관·국민 모두의  
 공익에 부합되는 것인 만큼 어떠  
 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법에 규정  
 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보복성 구속' 여론 참작된다

## 이 감사관 왜 보석 결정했다

30일 서울형사지법이 이 감사관에게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보복성 구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보복성 구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보복성 구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지배적이었다. 문제의 감사자료는 재벌의 부

동산투기가 당국이 공표한 것으로 훨씬 심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이라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법사건은 헌법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 충분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많은 공판준비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도 "이번 사건이 국회 회기중 파국을 불러일으킬

# 감사외압 입증돼 검찰주장 설득력 잃어

## “공판기간 늘려 파문 축소 이도” 분석도

의 주장과 달리 이 감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이 재벌 등의 외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음이 상층 부면 입증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문옥 감사관 사건일지>

- △5.11 = <한겨레신문> '업계의 비로 감사 중단 보도'
- △5.12 = '27개 재벌 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43% 추정' 보도.
- △5.14 = 대검 중앙수사부, 이 감사관 연행.
- △5.15 = 이 감사관 구속 수감.
- △5.23 = 구속직부심, 이 감사관 '서용시 예산 88억 선거자금 건용' 감사 외압을 거의 청화해

지 모른다.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으나 이미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보석허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이 감사관을 파문 또한 이번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감사관은 구속직부심 심리

90년  
한겨레 7.1

이 감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이 재벌 등의 외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음이 상층 부면 입증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감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이 재벌 등의 외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음이 상층 부면 입증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 90.7.1

「기밀누설」 「일권리」 「攻防계수」 「투표」 「공판기간 늘려 파문 축소 이도」 분석도

이 감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이 재벌 등의 외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음이 상층 부면 입증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 90.7.1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의 대통령 선거자금 전용 문제 등 6공화국 정권의 도덕성에까지 손상을 가할 만한 사실들을 폭로한 것을 비롯, 첫 공판에서도 감사원에 대한 3가지 외압 사례를 털어놓았다.

이 감사관의 폭로사실 중 대기업 비업무용토지 비율이 은행감독년 발표보다 훨씬 높다는 점과 80년 부정축계 환수계산 증발사실 등 몇몇이 진실로 밝혀지고 특히 서울시 선거자금 전용문제 당시 노태우 민정당 총재 명의로 일선구청장 등에게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서까지 공개됐었다.

이 바람에 국회 본회의가 공전되는 등 최근의 정국이 파란을 겪고 있어 이 감사관 사건은 더욱 정치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상황이었다.

법원이 한민 구속직부심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과 그간 재판부가 보인 이 사건에 대한 시각 등이 비추어 이같은 정치적 요인이 이번 결정에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감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이 재벌 등의 외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음이 상층 부면 입증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감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이 재벌 등의 외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음이 상층 부면 입증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 90.7.1

# 拘束 31시간 25분

이 감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이 재벌 등의 외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음이 상층 부면 입증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재판부 '可罰性' 크지 않다

## 李文玉 감사관 보석 결정의 의미

이 감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이 재벌 등의 외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음이 상층 부면 입증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0.7.1

## 抗訴 審判부 31시간 25분

이 감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이 재벌 등의 외압에 의해 심각하게 위축돼 있었음이 상층 부면 입증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0.7.1

# 이문옥 감사관 보석허가

## 서울형사지법 검찰 즉시항고 밝혀 석방안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언론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 이문옥(51) 감사관에 대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3면>  
서울형사지법 최춘근 판사는 30일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번 재판이 역사에 남을 중요한 재판인 만큼 증거조사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감사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감사원 자료를 건네 준 동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엇갈려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증인소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3%라는 자료내용의 진위 여부가 초점이 된 만큼 해당기업 전체에 대한 신문이 불가피해 구속만기 안에 이같은 심리과정을 마치기가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구속적 부실에서는 검찰에 충분한 수사 기회를 주기 위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과라서 이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관계 함으로써 검찰과 피고인 쌍방에 대등한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 감사관의 석방여부는 검찰의 항고에 대한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의 심리가 끝난 뒤에야 결정된다. 이 감사관은 지난 5월15일 구

속돼 2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으며, 6월7일 박인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신청을 냈었다.

한겨레 90.7.1

## 이문옥 감사관 재판 미루지 말라

### 보석 허가에 정치적 계산은 없는가?

이문옥 감사관에게 보석이 허가된 것은 눈이 띄게 띄이는 소식이었다. 서울형사지법의 담당 판사는 지난 6월30일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번 재판이 역사에 남을 원인 만큼 증거조사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결정을 내렸다. 구속 자체가 부당했으므로 석방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진국에 걸치 '이 감사관 석방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시민운동까지 벌어져 당국에 대한 압력이 거세진 사정을 보면 보석 허가는 담당 판사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여론의 승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보석을 허가한 판사의 보석 이유는 몇가지 의문을 일으킨다. 첫째, 이 감사관이 인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이" 구속되고 작부심이 기각되었는가? 그는 당초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과 재벌의 입김에 의한 감사 중단 사실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사람이 자신임을 감사원에서 스스로 밝히고 수사기관에 언행되어 상당한 모습으로 구속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는 오히려 감사원과 정부 당국에 있다고 보았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고려할 때 그 구속 자체가 부당한 일이었다. 둘째, 이 감사관 사건의 '역사에 남을 재판'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한 사안이다.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과잉행위가 보호해야 할 '국가비밀'인 지만이 쟁점이다. 이 감사관 사건이 확대되고 파문을 일으킨 것은 오히려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독립을 지키야 할 감사원에 재벌의 검은 손길이 뻗치고, 청와대의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이 감사관의 입을 통해 터지나오자 헌 정권은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명백한 법률적

결론을 내리면 족하지 '역사에 남을 재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보석 허가의 이유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충분한 증거조사 등 많은 공판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주장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납득이 안 간다. 물론 이 감사관을 석방해서 유리한 자료를 모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첫번째 공판 때 담당 판사는 이 감사관의 모두진술조차 제한하고 답변을 자주 제한함으로써 변호인단이 법원 기피신청까지 고려했다는 보도도 미루어보면 그런 '선'의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더구나 1심 구속만기가 4개월 남짓이나 남아 있다. 이 감사관에 대한 보석 허가는 당연한 일이며 그렇게 한 재판부가 비난받을 까닭은 없다. 그러나 재판부의 보석 허가 이유는 숨겨지지 못했다. 왜 이 감사관의 구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보석 허가 결정이 공판을 미루어 파문을 막아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되돌아보면 이 감사관은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과의 집견에서, 그리고 첫번째 공판에서 엄청난 사실들을 잇따라 폭로했다. 시신이 갈수록 폭로가 진실임이 입증되었다. 이 감사관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그의 폭로로 큰 상처를 입어 온 헌 정권으로서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감사관 석방을 두고 일부에서는 헌 정권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담당 재판부는 그가 보석된다고 해서 공판기일을 미루거나 심리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빠른 시일 안에 실제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궁극적 이익을 풀어주고, 행정당국의 '편의적 비밀주의'를 뿌리뽑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을 내리야 할 것이다.

90.  
한겨레 7.3

保釋 결정 李 감사관

# 이례적 구두신문

이문옥(51)씨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13일 오후 구속된 지 5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문옥 감사관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마중나온 부인 최중숙(46)씨 등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90. 동아 7.6

## 이문옥 감사관 풀려나

### 서울지법 "증거인멸 우려없다" 항고기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51)씨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13일 오후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이날 "이 피고인에 대한 기록과 신문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항고를 기각했으며 검찰 역시 법원의 결정에 승복, 대법원에 재항고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보석 청구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등 법에 정해진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3개 재벌기업의 비영리 무용 부동산 파세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15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됐었다.

이씨는 그동안 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폭로한 내용을 검찰 및 해당기관이 부인했던 사실과 관련 "표현상의 잘못은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과 다른 것은 없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있

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폭로한 내용을 검찰 및 해당기관이 부인했던 사실과 관련 "표현상의 잘못은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과 다른 것은 없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있

한겨레 90. 7. 14



검찰의 즉시항고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13일 오후 구속된 지 5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문옥 감사관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마중나온 부인 최중숙(46)씨 등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 감사원 위상 바로잡고 싶었다

### 59일만에 풀려난 이문옥씨 인터뷰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지 59일만인 13일 석방돼 집으로 돌아온 감사원 이문옥(50) 감사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감사원 공무원이 권력기관과 재벌기업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나 사명감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판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무원아파트(27평형)에서 부인 최중숙(46)씨와 두 자녀, 석방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친지들에 꼭 둘러싸여 시종일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그동안 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폭로한 내용을 검찰 및 해당기관이 부인했던 사실과 관련 "표현상의 잘못은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과 다른 것은 없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있

는 표정을 지었다. -석방 소감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됐다고 생각한다. 구속당시만 해도 혼자 의롭게 투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자료를 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8월 바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감사원 인사가 있는 뒤에 공개한 점 등을 들어 이 감사관의 공개 동기를 인사불만이라 보고 있는데, =지난해 8월 당시에는 감사원의 조직확대작업이 추진중이었다. 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감사원축소론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때 언론에 공개했다

## 나의 행동 외풍막는 계기됐으면 재판과정 통해 진실 밝혀나갈 것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국민 힘 크게 작용 =언론과 국민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도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검찰에서는 재벌의 비영리 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에 관한 감

단될 것을 우려해 이 작업이 끝난 뒤에 공개한 것이다. 누차 말해왔듯이 이번 행동의 동기는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는 충정이었다. -현대그룹의 자본거래차익에 대한 과세실태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 등 구속적부심에서 새롭게 밝힌 사실에 대해 검찰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 동료들로부터 면회나 격려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동료들이 인사권자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그들 또한 본인의 행동이 감사원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임범 기자>

고 발표했는데.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이 있는 뒤 감사원에 해명자료를 요구,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발표한 것 같다.

### 검찰 수사태도 미온적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사에 미온적인 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예산의 대통령선거자금 유용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와 본인을 대질신문하면서 서울시 관계자가 자료를 본인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다른 직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자료를 건네준 일이 있는냐는 식의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의 진술을 근거없는 것으로 단정해 버리고 말았다.

### 징계철회 끝까지 투쟁

-감사원에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본인은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중단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자부한다.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의 정당함을 밝히고 징계철회를 위해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싸울 생각이다. -수감생활은 견딜만했는가. =지난해 4월부터 소신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구속도 각오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단식호흡을 했었다. 수감중에도 단식호흡을 했으며 책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

아 주로 가벼운 책을 읽었다. 수감중인 다른 사람들이 범 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격려를 해주어 외롭지 않게 보냈다. -수감중 감사원 동료들로부터 면회나 격려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동료들이 인사권자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그들 또한 본인의 행동이 감사원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임범 기자>

## 9-1.구속 후 1차 공판 관련 내용

### 이문옥 감사관 내일 첫공판

1990. 8. 27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관한 감사자료(한겨레신문)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문옥 감사관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이 감사관 구속 42일 만인 28일 서울형사지법 최준근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재판은 이 감사관의 구속 당시부터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대대적으로 논쟁이 벌어질 만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적용 범위, 이 감사관의 제보 동기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뜨거운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문옥 감사관이 제공한 감사자료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2년 6월의 대법원 판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만약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불

편의 감사보고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감사관의 감사보고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도 아니고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은 더욱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오히려 재벌그

그러나 변호인단은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43.3%라는 감사보고서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 보고서가 중간보고서로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감사관 스스로도 <한겨레신문>에 제보할 때 충분히 밝혔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은 중간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됐는가 하는

점을 파고들어 감사원의 감사가 외부의 힘에 의해 중단됐거나 회피된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감사관의 행위가 정당했고 동기가 순수했으며 감사원이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됐음이 입증될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 25일 국세청이 5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18.2%라고 발표한 사실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 비록 판정기준이 다르더라도 이는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2%보다는 훨씬 높다는 이 감사관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조사한 18.2%는 이 감사관이 조사한 43.3%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워 국세청의 발표는 이번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철원 기자>

## 기밀누설-알권리 법정공방 예상

### 부정확 자료로 정부 공신력 실추 감사중단 외압부각...정당성 초점

검찰

변호인

른 정부와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재벌그룹에 속한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43.3%라는 이문옥 감사

관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정무기관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국민 역시 이를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문옥 감사관이 조사한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 43.3%가 부정확하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정확한 자료를 외부에 알린으로써 정부의 공신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 감사관의 감사자료가 부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 재판 준비를 해 왔다.



# 이 감사관의 폭로는 '진실'이었다

## 국세청이 입증한 은행감독원의 잘못

재벌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은 이문옥 감사관이 구속된 뒤 분분하던 여론에 명쾌한 답을 내려주었다.

이 발표는 5대 재벌에 한정된 것이어서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룹들을 망라하고 있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실태를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현대·럭키금성·대우·한진외의 5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의 18.2%가 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2%'의 9배가 넘는 것으로서 국세청이 같은 공공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문옥 감사관이 밝힌 '43.3%'에는 못미치지만 그가 강조하려고 했던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는 그 재벌회사들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 낸 신고서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 가운데 신고되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양도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물론이다. 또 국세청이 업무용이나 아니냐를 가리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끈질긴 '공작'에 관계자들이 꽤나 시달렸다는 후문도 있고 보면, 판정기준을 적용할 때 애매한 부동산들이 업무용으로 구분되었으리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이런 국세청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감독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이용만 감독원장은 서둘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준일시와 판정기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격차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차이'라는 지적을 받자 "기본적으로 은행과 재벌은 상인과 고객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형상 엄격하게 관리

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다. 은행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이처럼 짧은 말로 적절히 표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을 감독하고 그 유착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런 발언을 할 만큼 사태는 갈 데까지 가버렸다.

은행의 '참 고객'은 누구인가? 재벌들은 큰 거래를 하는 상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은행의 큰 채무자일 뿐이다. 서민들은 적은 돈을 들고 찾아가지만, 어렵게 저축해서 은행에 맡기는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지도 못하는 '고객'이다. 은행은 그들의 돈을 모아다가 재벌들이 땅 사는 데 뒷돈을 대어주는 일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도 부동산 투기를 해 온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마다지 않는 재벌들이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댄 것을 당연한 듯이 넘겨버리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끼니를 걱정하며 거리에 손수레를 끌고나간 빈민들이 이리저리 쫓기는 세상에서, 남의 돈으로 투기를 하는 일에 은행이 협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은행의 여신관리를 강화해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사리대로라면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서민은 눈여겨 보지도 않고 재벌단을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은행과,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행감독원에 다시 기대를 걸겠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 당국이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지 않으면 절름발이가 된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 90. 6. 27

## 10. 이문옥 감사관 수상 관련 내용

# 욕망까지 만원... "퇴진 노태우" 여호



## 범야권 보리매집회 이모저모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이문옥 검사(오른쪽)가 김민석, 공영근대표 등 인사 문 받고 있다. (이철우 기자)

## “변절한 김영삼 ‘내각제 포기’도 못믿어”

“민주세력 단결잔치로... 날치기 야합 여당 통렬히 비판

질서 유지인 2천여명 과열방지에 진땀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반·민주 양념과 국민인원, 회의 중 반야권이 내어 줬던 의 미를 옹기 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렁이가 되기도 했다. 지난 87년 6월 평정어네 거 모인 87만 6천 명에 달하는 시흥 위기농은 부회기 측에

90년 12월 7일 20일



오랜만에 '용감한 공무원'의 아내. 지난 7월 열린 진상규명추구대회에서 이감사관의 아내 최중숙씨가 박경숙 평민당부총재로부터 '용감한 공무원상'을 수상하고 있다.

# ‘李文玉 불꽃’ 상층부로 점화

5·6共 핵심세력 관련 비리도 폭로... 여름정국 '핫 이슈'로 비화될 조짐

과 연李文玉감사관은 정경유착과 대형 부정부패로 가득차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인가. 아니면 검찰·재판·감사원측의 주장대로 '수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터무니없는 소리'를 연발해 이른바 '총체적 난국'의 수습을 어렵게 만든 반사회적 불평분자인가.

그는 지금 총합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일반 피의자라면 당연히 재판을 통해 법정행위의 경중이 가려지고 그에 따른 刑량이 선고되는 사법절차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감사관의 경우는 다르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가 언론에 체보한 '비밀', 또 5월23일 구속적부심 심문과정에서 밝힌 엄청난 '비밀'들이 어디까지 진실이냐가 (체보 및 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시사저널> 31, 32호 게재). 이에 대해 검찰은 단 하루만에 관련 참고인 18명(감사원 13, 국제청 2, 서울시·중앙일보·은행감독원 각 1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그가 진술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가 여론의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폭시키고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감사관의 진술을 통해 공개적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들이 한결 같이 해당기관의 '일급기밀'에 해당되는 것들

재벌그룹의 부동산 의혹 사례

삼성생명 5만여평	수서·일원지구 주택개발지구	롯데월드	잠실주공5단지
삼성생명 7만여평	8차선도로	잠실역	
개포9단지	개포4단지	신원동 29번지 26,671평	신원동 7-18 6,702평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삼성 보유 12만평·7만평(8차선 도로변)은 서울시의 택지예정지구에 편입되지 않아 개발 후에는 값비싼 '노른자위 땅'이 될 것 같다. 롯데그룹의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 땅 : 우측의 6천평은 82년 서울시로부터 평당 61만5천원에 매입한 땅으로 현재 16배 이상 지가상승. 좌측의 2만6천여평은 87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평당 3백7만원에 매입, 현재 10배 가까이 땅값이 올랐다.

로서 수사상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삼성·현대·선경 등 대제별 그룹은 물론 서울시·포항시·군인공제회·80년의 계약사 합동수사부 등 조사대상 역시 광범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의 수사관례로 보아 이감사관이 진술한 8건 중 단 한건의 진위를 밝히는 데도 10여일이 걸릴텐데, 검찰은 어떻게 이처럼 발빠른 행보로 조사를 끝내고 서둘러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는 계 시민들의 반응이다. 검찰수사는 이감사관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론 진화용 '해명성 수사'에 그쳤으며, 이처럼 검찰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외압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일 서울 및 대구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①이감사관의 즉각 석방 ②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제정 ④제벌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실태 전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全民聯은 5월26일부터 이감사관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연합은 '권력형 비리 및 재벌소유 토지조사에 대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기타 사회단체 등에서도 '이문옥 석방'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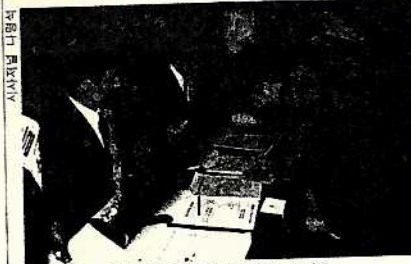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평민당·민주당(가칭)·국민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진상규명 및 석방촉구대회'에서는 이감사관을 대신한 부인 崔重淑(46)씨에게 '용감한 공무원상'을 수여하고 그의 구속은 '제벌 위주 경제정책의 허상'을 감추고 '87년 대통령선거의 부정'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차트를 들고나온 柳寅鶴 의원(평민)은 "강남구 일원동의 땅 12만평은 삼성생명과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노른자위 7만평은 서울시의 주택개발지구로 편입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하철 신설노선이 그 땅의 중앙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 (그림 참조) "롯데그룹이 보유한 강동구 신천동 롯데월드 건물 건너편의 땅 2만6천여평은 87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평당 3백7만원에 매입했는데 채 3년이 안된 지금 땅값이 10배 가까이 올랐으며, 현재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이는 업무용

으로 위장하기 위한 처사"라고 밝히고, 이런 사례들은 "이감사관의 폭로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평민당 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 洪英基의원)는 수감중인 이감사관을 2회 접견하고 그의 진술내용을 자체조사한 결



'이감사관 가족들기' 음식장터(6월9일 경실련 강당).



'이문옥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서명하는 시민들.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 6월2일 파고다공원에서 집회를 가진 시민들이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과, 지난 80년 계약사 합수부(본부장 손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가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1천1백33억원 가운데 3백97억원이 증발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수재산의 차액발생에 대해서는 지난 89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 모두 확인, 보고되었으며 당시 확인되지 않은 차액 21억원에 대한 사항은 오는 임시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이 문제는 여론 정국의 '핫이슈'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처럼 '이문옥 진술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연계철선으로 이어진 지뢰밭처럼 엄청난 폭발음을 터뜨리며 권력의 상층부로 점화되어가고 있다. 처음 그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제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 및 그에 관한 비리'로서 그 주된 공격목표는 제벌기업의 부동산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속된 이후, 서울·예산 88억원의 선거자금 전용·계약사 합수부의 환수재산 유용·그룹회장이 盧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선경의 법인세 12억원 탈세 등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내용들을 폭로함으로써 '이문옥 진술파문'을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까지 밀어올리는 데 성공한 셈이다.

"관료사회 도덕률 근원적 검증 필요" 여론도 "그가 옳은가, 아니면 검찰이 옳은가. 그에게 '용감한 공무원상'을 수여한 야당과 국민연합은 그의 진술이 진실임을 밝혀줄 명백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가." 진상규명대회의 방청석에 앉은 한 시민은 "냉정한 눈으로 사태를 주시하고자 한다"며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현시점에서는 '의문이 곧 여론'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임시국회와 이감사관에 대한 재판과정을 통해 의문의 상당부분이 밝혀질지 모른다. 그에 따라 50세의 감사관 이문옥은 부패와 비리의 城을 향해 '單騎를 전을 감행한 義人'인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희대의 거짓말쟁이'인지도 판별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진술한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와는 별도로, 관료사회의 도덕률에 대한 근원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번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80만 공직자가 인간양심의 범칙에 따라 살 수 있는 인본주의적 행정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 경색된 관료주의의 石化作用에 의해 공무원 개개인이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반응'마저 포기

당해야 하는 메커니즘 속에서는 참다운 공직자의 윤리가 싹트기 어렵다"는 게 이러한 여론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모든 경제·사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며 과세·치안·환경감시·복지후생 등 국민생활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공무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위압이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朴相基 記



· 경실련 출범1주년 이문옥 감사관에 시민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변형운·황인철·송원주·이효제)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YWC A 대강당에서 '출범 1주년 및 <경제정의> 창간 기념식'을 가졌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 비리를 폭로해 구속된 이문옥 전 감사관

을 '경제정의를 실천한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 부인인 崔重淑(46)씨에게 대신 상패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1년 동안 토지·주택문제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며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위해서도 활발한 '시민운동'을 벌여 경제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영향력 있는 단체로 활동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진정영 기자>

한겨레 90.7.8



# 記者協會報

發行人 朴參株  
 編輯人 朴參株  
 社址 特別市 中區 大東路 1街 25 號 地  
 韓國記者協會 會館 13 樓  
 電話 734 9321 ~ 3  
 F. A. X 738 1003

韓國記者協會 綱領  
 1. 本會는 韓國의 民主發展과 實業의 發達을 爲한 努力을 爲한다.  
 2. 本會는 韓國의 經濟發展을 爲한 努力을 爲한다.  
 3. 本會는 韓國의 社會發展을 爲한 努力을 爲한다.  
 4. 本會는 韓國의 文化發展을 爲한 努力을 爲한다.  
 5. 本會는 韓國의 國際關係를 爲한 努力을 爲한다.

## 「全國記者가 뽑은 올해의 人物」에 李文玉 前 社長 選出

### 신문의 위협 불구 非理폭로 욕기 인정 28일 「記協 50년모임」서 기념패 증정

「全國記者가 뽑은 올해의 人物」에李文玉(前 社長)이 선정되었다.李文玉은 1989년 11월 16일 제 3종 우편 (물)가산 인가 (第624號) <週刊>에 실렸다.李文玉은 1989년 11월 16일 제 3종 우편 (물)가산 인가 (第624號) <週刊>에 실렸다.

八道 사설상 폐간  
 22일 발표했다. 사원폐간건의 八道日報대표이사 權龍은 八道日報의 자구노력이 불구, 인정을 받지 못하여 폐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원폐간건의 八道日報대표이사 權龍은 八道日報의 자구노력이 불구, 인정을 받지 못하여 폐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모든 50명당원의 재산을 총액에 4분의 1을 기부할 것을 결의했다. 4명의 후보들중 최후를 차지한 김기현(50명당원)은 48.8%를 차지했다. 김기현은 11월 22일 발표된 사설상 폐간건의 八道日報대표이사 權龍을 지지했다. 김기현은 11월 22일 발표된 사설상 폐간건의 八道日報대표이사 權龍을 지지했다.

한편 「전국기자협」은 1989년 11월 16일 제 3종 우편 (물)가산 인가 (第624號) <週刊>에 실렸다. 「전국기자협」은 1989년 11월 16일 제 3종 우편 (물)가산 인가 (第624號) <週刊>에 실렸다.

### 「올해의 人物」 선정결과

「全國記者가 뽑은 올해의 人物」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선정된 人物은李文玉(前 社長)이다.李文玉은 1989년 11월 16일 제 3종 우편 (물)가산 인가 (第624號) <週刊>에 실렸다.

이 가운데 최후보자가 5명 중 41.1%를 차지했다. 최후보자는 김기현(50명당원)이다. 김기현은 48.8%를 차지했다. 김기현은 11월 22일 발표된 사설상 폐간건의 八道日報대표이사 權龍을 지지했다.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도 민주언론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다. 감사합니다.  
 1990년 12월 28일  
 韓國記者協會 임원·직원 일동



11.소송 관련 내용

기자협회보 90.12.28

# 이문옥감사관 파면

1990. 12. 28

중앙징계위 이씨, 결정불복 소청심사 청구 밝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폭로해 공무원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13일 풀려난 이문옥 감사관이 27일 파면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중앙징계위(위원장 정문화)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감사관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여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위는 "이문옥 전 감사관은 감사활동으로 취득한 자료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출시켰으며 이후에도 대중집회에 참석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파면한다"고 의결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이 감사관은 중앙징계위에 출석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평소 신념이었으며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보유 실태에 대한 감사가 외부압력 등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했으며 이같은 행동은 아직도 뉘그러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15일 이 감사관의 폭로가 있자, 5월26일 직위해제 조치를 한 뒤 총무처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 이감사관 '올해 인물로'

### 기자협회 선정

한국기자협회(회장 이근성)는 27일 '전국 기자가 뽑은 올해의 인물'로 이문옥 감사관을 선정했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이 감사관이 총투표자 3,113명 가운데 37.8%인 1,176표를 얻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이 감사관 외에는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이 923표, 30년 동안 김밥 장사로 모은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충남대에 기증한 이복순 할머니가 808표를 각각 얻었다.

한겨레 90.12.28

# 李文玉감사관에

# 징계위 출두요구

1990. 12. 28  
동아 政 府

동아 90.12.28

국민 90.12.28

# 李文玉파문 증폭再燃 조짐

## 징계위 파면, 사고 본인 汎野圈 반발

공무원의 성실의무 불이행... 추방 불가피



李文玉씨

공무원의 성실의무 불이행... 추방 불가피

1990. 12. 28

이미 드러난 非理 국민 알권리위해 공개

추세 소청심사위서 철회안되면 行訴... 法廷공방 장기화 예고

이문옥 감사관은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중앙징계위(위원장 정문화)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는데,

# 「알권리」의 새 잣대 예상

## 관심근근이李文주씨 선근근이

9. 감사원의 감사추소의 후 발사상 단 1차 행의 판공을 의뢰한 문공부 감사원 감사추소위원회는 16일 서울지검 공판부 양경석 검사는 서울지검 공판부 양경석 검사는 16일 지난 90년 5월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내용을 언론 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53)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을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문옥씨

## 국무원의 비밀누설죄에 대한 '첫 판결'

### 國家이익論의 상반된 시각 대립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속당시부터 「보통수사」라고 일부 비난과 함께 정부의 정권교체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기도 했지만, 추후 여러 다른 재판결과에 행 정정보당과 재판정판결을 상에서 국장자의 비밀누설죄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조정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문옥씨에 대한 재판은 「보통수사」라는 표현을 쓴 1차판결 이후 6월 2차판결이 내려졌고, 8월 10개월 동안 재판부가 4차 재판이 내려진 뒤 9월 16일 서울지검 공판부 양경석 검사는 이문옥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을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8. 17. 93. 8. 17. 서울지검 공판부 양경석 검사는 16일 지난 90년 5월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내용을 언론 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53)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을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 93.8.17

93.8.17

# 이문옥 전감사관 무죄 선고

서울형사지법 부동산자료공개 비밀누설로 볼수없다

재판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했던 이문옥(53)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 판사는 6일 90년 5월 23개 재판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 모방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기사 18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과고인이 공개한 감사원 중간감사자료란 그 내용이 상당한 근거와 바탕을 둔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실추시키거나 해당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부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과고인이 공개한 감사자료는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6일 오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겨레 93.9.7

이문옥 전감사관 무죄판결 의미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수없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 판사는 6일 90년 5월 23개 재판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 모방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기사 18면

## 국가 정보독점 잘못 첫判決

사법처리된 다른 良心선언자도 영향줄듯

이문옥 전감사관 무죄판결 의미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수없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 판사는 6일 90년 5월 23개 재판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 모방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기사 18면

중앙 93.9.7

## 이문옥 전감사관 무죄판결 의미

지난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실태를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53)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6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될 때 국민의 알권리를 더 우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판결은 특히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명백히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부동산업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이 전 감사관의 '공익적 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이 때 법원이 이 전 감사관의 폭로 당시 공개자료 내용의 성격으로 인해, 정부가 이 전 감사관을 전격 구속한 것은 '폭로에 따른 보복'이란 비난을 사기도 했으며, 그 뒤 이 전 감사관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자 이 전 감사관을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 전 감사관에 대한 판결은 공무원의 공무상

부동산업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이 전 감사관의 '공익적 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이 때 법원이 이 전 감사관의 폭로 당시 공개자료 내용의 성격으로 인해, 정부가 이 전 감사관을 전격 구속한 것은 '폭로에 따른 보복'이란 비난을 사기도 했으며, 그 뒤 이 전 감사관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자 이 전 감사관을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 전 감사관에 대한 판결은 공무원의 공무상

## 용기있는 양심의 '소중한 승리'

공무상 비밀 범위 첫 판례...내부 고발자보호법 서둘러야

재 그동안 행정기관이 내부에서 처리중인 중간문서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 과거 정권 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들의 행동과 관련해 내부고발자 보호법(또는 양심선언자 보호법)의 입법화 운동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판례는 사법사상 단 3차례밖에 없었으며, 이 사례들은 모두 특정대가를 바라고 도시계획정보 등을

비밀보호 범위에 대한 사실상 첫 판례란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은 "비밀로 분류된 사항 이외에 정치·군사·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왔다.

이러한 판례는 재야법조계는 물론 법원내부에서도 "직무상 비밀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함으로써

고 여겼기 때문에 무죄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과거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사관은 또 "이 사건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아니냐 보다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외부의 압력이나 상부지시에 의해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이익이 침해받았다는 점이 더 주목되어야 했다"며 정부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우 기자

한겨레 93.9.7

# 李文玉 前감사관 無罪선고

서울地法 資料공개로 公益에 도움줬다

이문옥 전감사관 무죄판결 의미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수없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 판사는 6일 90년 5월 23개 재판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 모방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기사 18면

## 국민 알권리의 승리

이문옥 전감사관 무죄판결 의미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수없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 판사는 6일 90년 5월 23개 재판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 모방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관련기사 18면

# 정의는 이긴다

## 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판결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리라 믿고 살고는 있지만, 그 말을 실감있게 느끼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토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가 강력했고, 국회가 청문회까지 열어도 광주항쟁에 얽힌 매듭은 전혀 풀린게 없다. 요즘 한창 떠들썩한 12·12나 울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 비리나 의혹이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속 시원히 규명되리라는 기대 또한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중에 지난 6일 있었던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한 무죄판결은 모처럼 초가을 선들바람 같은 청량감을 안겨준다.

이문옥 감사관이 구속기소되고 감사원에서 직위해제 끝에 파면이라는 고초를 겪게 된 것은, 그가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3%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는 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한겨레신문>을 통해 사회에 고발한 때문이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조리는 내부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만 척결해 낼 수 있다는 소신을 실천에 옮긴 것이지만, 바르지 못한 정권은 그의 바른 행동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차례 이 감사관에 대한 구속과 파면의 부당함을 지적해왔다. △은행감독원의 공식발표를 통해 30대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1.2%라고 한 것을 비롯이나 하듯 뒤엎었다거나 △감사원 감사가 외부의 압력으로 중단됐다며 부끄러운 곳을 들춰냈다는 사실들이 이 감사관을 구속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검찰이 구속사유로 내건, 단기간의 조사로 부

실한 내용이다 최종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중간 문서라는 구차스러운 이유들은 결국은 정부가 비위에 거슬리면 누구나 처벌할 수 있다는 독선적 의지를 과시한 데 불과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은 이제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에 맞지 않는 일처리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런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죄판결은 예상됐던 것이긴 하지만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에서 '비밀'을 '명백히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한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무게를 주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간 담당 법관의 인사 등 법원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기소 뒤 3년3개월이나 지나서야 판결이 났다는 사실이다.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이 판결을 주저했다는 견해는 무시하더라도 그동안 피고인이 겪은 고통과 고초는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의 판결을 문민시대를 맞은 시대분위기의 반영으로 보려는 일부 시각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의미에서 판결의 지연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런 견해를 배격한다.

아무튼 이 감사관은 오랜 투쟁 끝에 무죄판결을 얻어내어 정의는 이긴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었다. 이 1심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고법에 계류중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승리하기를 기대하지만, 바라는 현 정부가 스스로 파면을 취소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이다.

한겨레 93.9.8.

# 정보공개법의 필요성

정보공개법 제정 필요성  
한 나라의 발전은 국민의 알권리에 달려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 제정 필요성  
한 나라의 발전은 국민의 알권리에 달려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 제정 필요성  
한 나라의 발전은 국민의 알권리에 달려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조선 93.9.8

# “양심선언 보호 법제화 필요”

1993. 9. 0 8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1년을 구형받은 뒤 3년4개월 만인 지난 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문옥(53·사진) 전 감사원 감사관은 7일 “법이 나쁜만 아니라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일병 등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죄판결 소감은?

=나 자신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예로 보아 법원에서 과연 무죄로 판단해줄지는 회의적이었다. 이 사건은 6공 때에는 재판조차 열리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재판부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한다. 정말 시대변화를 실감한다.

-당시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사건 재판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지만 사건의 본질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상부지시에 의해 정당한 감사활동이 중단됐다는 데 있었다. 상부의 압력과 이에 순응해온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자는 게 양심선언의 목적이었다.

-이번 무죄판결로 복직될 것이 확실해졌는데.

=현재 서울고법 특별부에 계류중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선고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승소할 경우 감사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지를 판단해본 뒤 복직 여

부를 결정하겠다.  
-김영삼 정부 출범 뒤 감사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감사원이 예전과 달리 철저한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 감사원장의 역량과 의지에 좌우된 측면이 크지 감사원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한 예로 양심선언 당시 감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인사들이 현재 요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감사원이 정말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 정치의 잘못뿐 아니라 현 정권과 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사정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 전 감사관은 “지난 3년 남짓 온갖 어려움을 겪은 아내가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나보다도 더 기뻐했다”며 “아내도 고맙지만 이번 사건과 현재 계류중인 형사 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주며 무죄를 이끌어낸 박인재 변호사에게 특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열 기자

한겨레 93. 9. 8

## ‘무죄판결’ 반응 엇갈려

◇...7일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했던 이문옥(53) 전 감사원 감사관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감사원 간부들과 젊은 직원들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젊은 직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새정부 출범 이후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등장한 감사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 전 감사관의 무죄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간부급 직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피하는 등 애써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한겨레 93. 9. 8

## 이문옥씨 무죄선고 환영 민주당, 원직 복직 촉구

권왕순 민주당 부대변인은 7일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해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결과로서 환영한다”면서 “무죄가 입증된 이상 원직에 복직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겨레 93. 9. 8



“검찰은 이감사관 항소를 포기하라” 경실련은 지난 18일 오후 1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이문옥 전 감사관 항소에 항의, 1시간동안 시위를 벌였다.



‘시민감시단’ 발대식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가 ‘공명선거실천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관권개입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문옥 전 감사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3백여명의 참석자들이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우 기자·관련기사 14면>

**이문옥 전감사관 항소규탄  
경실련회원 검찰청사 시위**

경실련 회원 60여명은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전 감사관을 항소한 검찰의 행위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개혁과 민주화로 나아가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한겨레 93.9.18

李文玉 피고 무죄판결  
검찰서 불복 항소  
서울지검(5)판부(明魯昇 부장검사)는 14일 법원이 지난 6일李文玉 전 감사관(53)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데 불복해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에 항소했다.  
<呂始東기자>

93.9.15

시민의 시면 93. 9. 25

# 무죄판결 받은 이문옥 前 감사관 “감사원 남은 숙제는 체질개선”

그동안 ‘양심선언자의 대부’를 자처하며 가시발길을 걸어온 이문옥씨에게 ‘문민 법정’은 무죄를 선물했다. “감사원은 아직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대쪽기질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말이다.

“감사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회창 감사원장이 없다면 지금처럼 비리척결에 앞장 설 수 있었는가. 감사원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9월6일 형사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문옥 전 감사관(55세)이 다음날인 7일 경실련 주최 축하 리셉션에서 행한 일

성이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3년4개월여에 걸친 법정싸움에서의 승리감 피력보다는 감사원의 개혁을 강도높게 주장, 관심을 끌었다.

그는 특히 이날 축하모임의 인사말을 통해 감사원의 ‘체질개선’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국가통치를 주식회사의 경영론에 비유했다.

“감사(감사원)는 경영자(정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주주(국민)총회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이 정부와 결탁하면 주주인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다. 우리의 지난날이 이러했다. 감사원 자체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 “구속 주장 인사들 고위직에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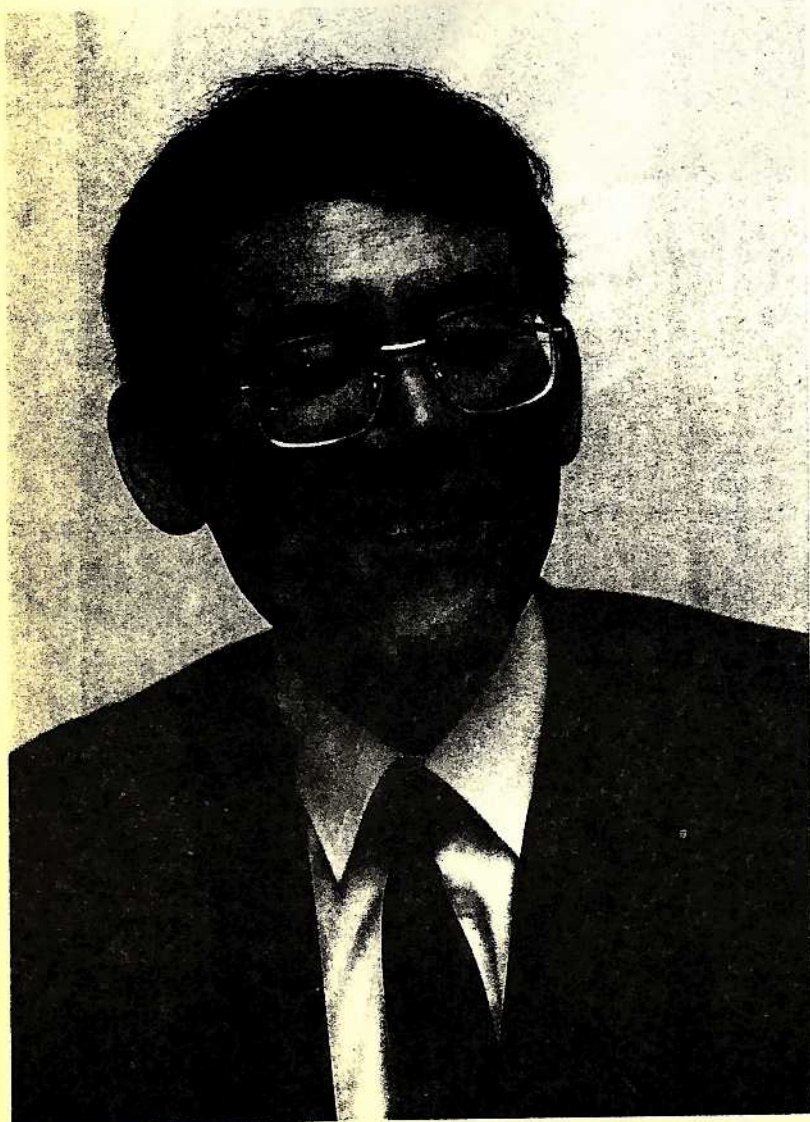
이 전 감사관은 90년 5월 감사원 재직시절 감사자료인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현황을 언론에 공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9월6일 서울형사지법(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결문 요지는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비밀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 감사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판결로 이 전 감사관의 감사자료 공개 동기가 그동안 승진탈락에 따른 불만이라고 몰아붙였던 일부 시각을 잠재워 버렸다.

이 전 감사관은 “90년 당시 감사원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비밀비재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감사원 기능이 마비되면 큰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감사관은 이번 무죄판결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행정소송(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의 복직문제가 세인의 관심을

← 이문옥 전 감사관은 감사원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진 우철훈 기자>



모으고 있다. 현재 그의 복직에 대한 감사원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냉담하다. “감사원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라며 복직에 부정적이다. 특히 고위간부로 올라갈수록 이같은 입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감사관은 복직문제에 대해 그리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그는 “감사원의 체질개선이 이뤄지면 복직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단호하다.

파면된 데 따른 행정소송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는 이번 무죄판결로 유명세를 몰게 돼 하루 24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고 강연 초청도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가시발길이었다. 우선 생계비부터 벽에 부딪혔다.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50%의 연금(현재 월 68만원)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들이 이 전 감사관이 파면된 직후 신문배달원을 하기도 했다.

다. 그는 요즘 그의 심경을 한마디로 “살맛난다”고 말한다. 역경을 거치는 동안 더 많은 새로운 동지들을 알게 됐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지난 5월 중단된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친김에 행정소송의 재개를 서둘러 복직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힌다. 그는 지난해말 한준수 전 연기군수, 윤석양 전 보안사 이병, 이지문 전 중위 등 15명의 양심선언자를 중심으로 ‘나라사랑양심선언자 모임’을 결성,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전 감사관은 “87년 이후 지금까지 50여명에 달하는 양심선언자를 규합, 서로의 장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양심선언자의 대부’를 자처하고 나섰다.

### “정부의도 따른 동료진술 괴로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무죄판결 소감은.  
“당연한 귀결이다. ‘아내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말한다.”

- 1심에서 무죄판결을 예상했는가.  
“30대 후반의 젊은 판사(김건일 판사·37)가 맡아 무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고 당일 조깅을 하면서 무죄판결에 대비, 기자회견 내용을 나름대로 메모했다.”

- 행정소송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여러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문민정부하의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할 때 파면취소 승소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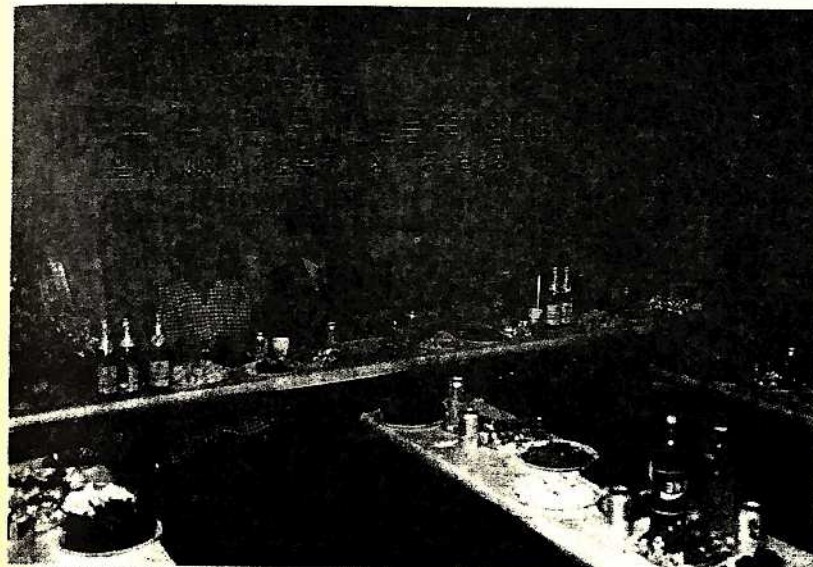
-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복직하는가.  
“일단 복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감사원에 계속 근무할지 여부는 상황파서 결정하겠다. 감사원 내부의 체질개선이 이뤄지는지가 변수다.”

- 14대 총선에서 출마했는데 앞으로 정치할 생각은.  
“그때는 광주시민이 민주화투쟁 차원에서 시민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에 나섰던 것이다. 지금은 답변하기에 이르다.”

- 그동안 가장 괴로웠던 일은.  
“내가 구속된 후 감사원 동료들이 불가피했겠지만 정부쪽 의도대로 법정진술을 했던 일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년을 넘게 무료로 나를 변호해준 박인제 변호사를 비롯, 주위 친지들에게 감사한다.”

〈김근식 기자〉



지난 6일 형사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문옥 전 감사관을 위한 경실련 축하연. 그는 법정싸움과정에서의 고통보다는 감사원 개혁에 관해 더욱 목적을 높였다.

이 전 감사관은 지난 4월 감사원에 4개 사항을 요구했다. 감사원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말것, 청와대 및 안기부 등 권력핵심부터 감사, 감사원 직제의 세분화, 감사원의 체질개선이었다. 이 전 감사관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체질개선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이뤄졌다”며 감사원의 내부수술을 주장하고 있다.

“90년 사건 발생 당시 나의 구속문제를 놓고 감사원에서 하루종일 토론을 벌였다. 구속을 주장했던 인사들 중 다수가 현재 감사원 고위직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는 “그러나 감사원이 예전과는 달라진 만큼 국민들이 계속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적어도 감사원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사원에 대한 애정표시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법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단지 90년 당시 사표를 내지 않고 강제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친지들과의 격리였다”고 말한다. 이 전 감사관에 대한 기관원의 밀착감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든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전화도 도청당했다. 자연히 친구들도 떨어져 나갔다. 감사원 자료폭로에 대해 구속명분이 공색했던 검찰 등이 고향 및 처가 등을 다니며 뒷조사를 하는 바람에 처지는 더욱 어려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내가 언론에 자료를 건네준 것을 알고 있는 일부 감사원 동료들이 그 뒤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더욱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가 법정투쟁하는 동안 그에게 용기를 준 일도 많았다. 명절 같은 때 익명으로 성금·쌀 등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제면직됐다 최근 복직된 서명원 전남대 전 교장이 복직으로 받은 월급중 1백만원을 보내오기도 했



# 이문옥씨 파면취소 판결

## 서울고법 “폭로자료 국민에 이익”...양심선언 보호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다보유 실태를 폭로했던 이문옥(55)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4면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 부장판사, 주심 윤재윤 판사)는 27일 이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언론에 공개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 자료는 국민적 이익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90년 5월 감사원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직후 공무원 비밀누설죄가 적용돼 구속되면서 파면처분을 받았던 이씨는 복직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이란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다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가 공개한 자료는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해 국민들의 공개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므로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감사는 감사도중에 세무서에 전화연락조차 못하게 급히 서둘러 마무리지었고 감사관원들을 이례적으로 전보발령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의 절차와 관행을 벗어난 것이었으므로 이씨가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그 부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94.4.28

# 李文玉 前감사관

## 파면취소 판결

서울高法

【서울 27일 특보】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 부장판사, 주심 윤재윤 판사)는 27일 이문옥씨(55)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한 파면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언론에 공개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 자료는 국민적 이익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90년 5월 감사원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직후 공무원 비밀누설죄가 적용돼 구속되면서 파면처분을 받았던 이씨는 복직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이란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다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가 공개한 자료는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해 국민들의 공개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므로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감사는 감사도중에 세무서에 전화연락조차 못하게 급히 서둘러 마무리지었고 감사관원들을 이례적으로 전보발령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의 절차와 관행을 벗어난 것이었으므로 이씨가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그 부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중앙 94.4.27

# 「李文玉씨 판결」공직사회 시각

李文玉전감사관의 복직 판결 소식을 접한 27일 오후 서울의 한 공직사회는 “이문옥씨의 파면취소 판결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이씨는 90년 5월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언론에 공개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 자료는 국민적 이익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李文玉씨

# 환영-냉소 잇갈려

## “공무원 신분보장-용기준것” “윤리성까지 회복은 아니다”

이문옥씨 파면취소 판결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씨는 90년 5월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언론에 공개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 자료는 국민적 이익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90년 5월 감사원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직후 공무원 비밀누설죄가 적용돼 구속되면서 파면처분을 받았던 이씨는 복직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이란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다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가 공개한 자료는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해 국민들의 공개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므로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감사는 감사도중에 세무서에 전화연락조차 못하게 급히 서둘러 마무리지었고 감사관원들을 이례적으로 전보발령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의 절차와 관행을 벗어난 것이었으므로 이씨가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그 부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 94.4.8

# 이문옥씨 파면무효판결 환영

## ‘밀실행정’ 심판한셈...모든 양심선언자 원상복귀 바람직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고등법원 412호에서 있었던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의장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취소청구사건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을 1천만 불자 및 국민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과거 정권의 정보독점과 밀실회책정정에 대한 심판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제 과거 부도덕한 정권 아래서 최소한 양심을 지키고자 일신의 고통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으로 진실을 밝혔던 수많은 이 시대의 보살들에게도 김영삼 정권은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깨끗한 정치,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잣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과거 모든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복귀를 추구하고, 부패하기 쉬운 관료조직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것은 진실의 불씨가 더욱 살아올라 정의와 진실이 통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지선/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으며 복직 구걸 안할 것”

## 법정투쟁 4년만에 파면취소판결받은李文玉 전감사관



그것은 4년에서 꼭 15일이 모자라는 시간이었다. 지난 90년 5월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폭로, 파면됐던 전감사원감사관李文玉씨(55)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파면취소판결을 받기까지의 세월이다.

“4년이란 세월이 길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약하나마 나름대로 할일이 꾸준히 이어져서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용기있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 고맙고 또 기쁩니다”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 이후 만난李文玉씨는 그때까지도 소감을 묻는 기자의 말에 다시금 법정에서의 판결 순간이 떠오르는 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보안사 민간인사찰을 폭로했던尹錫洋건, 14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폭로했던李智文전중위건, 관권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韓峻洙전충남연기군수건에서 최근에는 조계종사태에 이르기까지 그간 자신을 필요로 했던 일들이 무던하도 많았었다는 얘기다. 그런李文玉씨는 인터뷰 내내 시종 환한 표정이었다.

### 국민의 알권리가 공무상 비밀에 우선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이李文玉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데는 “李文玉씨가 당시 언론에 공개한 법

▲4년에 걸친 줄다리기를 끝낸李文玉씨는 최근 파면취소판결을 받은 전감사원감사관李文玉씨는 시종 밝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청탁 그의 복직문제가 어떤 식으로 최종 매듭지어질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金度亨기자)

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 자료는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란 해석이 전제되었다. 이날 재판부가 제시한 판결문은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이란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李文玉씨가 공개했던 자료는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 국민들의 공개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이므로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 당시 감사는 정상적인 절차와 관행을 벗어난 것이었으므로李文玉씨가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가 응당 공무상 비밀에 우선돼야 함을 재확인해 준 결과로 압축될 수 있다. 또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모두를 떠나 이번 판결의 결과는 구속과 함께 파면처분을 받아야 했던李文玉씨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며, 명예회복과 복직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에 우선 의미가 깊다. 그런 만큼 앞으로 한동안은 또 다시李文玉씨의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 “떠나던 당시의 직급이 무난한 조처”

이에 대해李文玉씨 자신은 “아마도 감사원을 떠났던 당시의 직급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 그것이 양측이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조처일 것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李文玉씨가 파면되던 당시의 직급은 4급. 감사가 중단되고 감사반원들이 전보발령을 받으면서 감사원 교육실에서 근무한 그는 직원들의 감사 관련 교육을 맡았었다.李文玉씨가 말하는 ‘무난한 조처’란 바로 그 교육실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으며 복직 구걸 안할 것”

뜻한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 및 여러 단체들을 상대로 회계감사기법을 비롯, 전반적 회계이론을 강의해 왔습니다. 4년여의 공백은 있었지만 감사관련 교육을 맡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간 자신의 공백기간 ‘경력’을 밝히는李文玉씨는 그러나 “결코 자리를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 절대 미운 오리새끼 취급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뺨치를 박았다.

이는 만약李文玉씨가 도저히 자신이 수락할 수 없는 한직으로 발령될 경우 당당히 거부하고 나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 내부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연구관’이란 보직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말이기도 했다.

당사자인李文玉씨가 이처럼 향후 복직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현재李文玉씨측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다소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李文玉씨 내부 분위기도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복직을 시대상황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전반적 분위기이긴 하다. 하지만 여전히李文玉씨를 ‘조직에 흠집을 낸 인물’로 보는 감정의 앙금을 씻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감사원 태도 불투명-분위기도 엇갈려

이같은 냉소적 반응은 특히 간부급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 간부는 “복직이 되더라도 감사관으로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 역시 그같은 기대는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또 당시李文玉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현재 대부분 과장이상의 직급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李文玉씨가 예전의 4급으로 복귀한다 해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추측들이다.

李文玉씨의 폭로사건이후李文玉씨는 알게 모르게 집안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었다. 이전과는 달리 현재 감사결과서 복사가 절대 금지돼 있음은 이를 잘 말해준다. 원본 한부만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하는 등 철저히 ‘잠금장치’를 하

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제공자에 대해 실무진들이나 간부들은 여전히 쫓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감사원법 개정작업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규정’ 신설을 신중히 검토한 적이 있었던李文玉씨가 결국 없던 일로 돌려버린 것도李文玉씨사건이 물고있던 파장을 상기한 때문이었다.

한편李文玉씨의 복직시기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李文玉씨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즉李文玉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또 다시 얼마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李文玉씨 법무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상고여부에 대해 아직 내부결정이 안난 상태라 현재로서는李文玉씨의 복직이 언제나 가능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상고만 없다면 당장 다음달이라도李文玉씨의 복직은 가능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李文玉씨는李文玉씨의 상고는 없을 것이란 주장을 했다. 법률전문가인 현李文玉씨원장이 별승산없는 충돌을 재연하려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번 울타리밖으로 밀어낸 사람을 파면취소판결이 떨어졌다 해서 금방 내집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솔직한 말도 덧붙였다.

어쨌든李文玉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비록李文玉씨 감사관이란 직책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다지 섭섭할 것이 없으며,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퇴직때까지 임할 각오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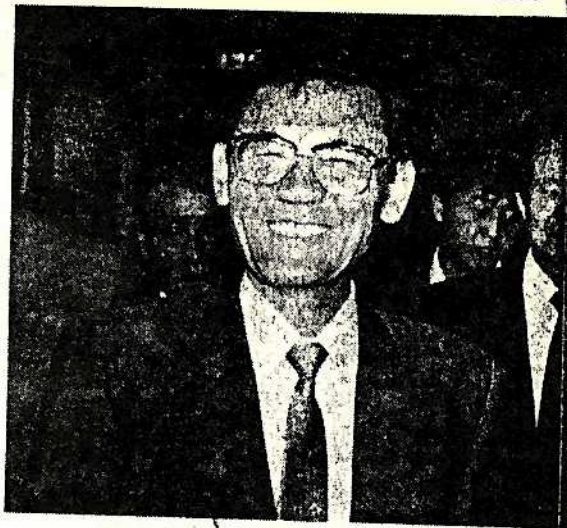
현재李文玉씨는 재가불자공동연합대표이자 전국불교운동연합공동의장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얼마전 조계종 폭력사태 때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徐義玄전총무원장의 퇴임운동에 참여, 이리저리 쫓아다녔었다. 그리고 요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나라사랑양심선언자모임 등과 함께 9일의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날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아야 하는데 혹시 그전에 복직되면 곤란할 것 같아요”

李文玉씨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여유를 보였다. 그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복직문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 질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李智文)

黃水貞기자

# 이문옥 전감사관 파면취소판결 의미



웃음짓는 양심 27일 오전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판에서 승소한 뒤 환한 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에게 27일 법원이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한 형사상 무죄판결에 이어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설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이에 맞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씨 등 과거정권 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미국의 내부고발자

# 비밀보다 알권리 승리

## 외압거부 '공직자 저항권' 일부 인정

보호법과 같은 양심선언자 보호법의 입법화운동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의 핵심적 징계사유인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에 대해 "비밀이란 국가공무원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확보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씨가 공개한 자료는 많은 부분이 오늘날과 같은 고도 정보사회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라 할 수 없고 설사 비밀이라 할지라도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민주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밝혀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대대히 한정적으로 해석했다.

이는 그동안 제야법조계 등에서 "직무상 비밀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정부의 정보독점을 무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이 사건이 감사가 외압에 의해 부당하게 중단되고 감사결과도 묻혀버리게 돼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므로, 설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양심선언'을 인정함으로써 이씨의 주장을 상응하는 의미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양심선언 내용이 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정확함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재판부는 "이 자료가 부분적인 오류가 적지 않은 조사 미완결상태의 문서로서, 여과되지 않고 공개될 경우에는 내용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론에 공

개할 때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별히 점검되어야 한다"며 이씨가 기자에게 자료를 넘겨주면서, 용에 부실한 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씨에게 완전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와 외부의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려준 법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부정비리를 적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부정비리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내부 성원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양심선언자 보호법 제정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 “국가 잘못 국민에 공개 합당”

## 李文玉 前감사관 勝訴 의미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에 대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의 파면처분 취소판결이 27일 서울고법에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설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이에 맞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씨 등 과거정권 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미국의 내부고발자

# 조직비리발생 정당성 부여

## 李前감사관 파면취소 의미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판에서 승소한 뒤 환한 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에게 27일 법원이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한 형사상 무죄판결에 이어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설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이에 맞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씨 등 과거정권 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미국의 내부고발자

## 기획어면 청와대監査 의미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판에서 승소한 뒤 환한 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에게 27일 법원이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한 형사상 무죄판결에 이어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설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이에 맞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씨 등 과거정권 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미국의 내부고발자

# 성실의무 어긋났던 인정해도 파면은 지나쳐

## 韓峻洙 前연기군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동아

중앙 94. 4. 27

한겨레 94. 4. 28.

#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법 제정에 온힘”

송현순 기자



-지금 하는 일은.  
 =현재 여야 국회의원 38명의 서명으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이 입법청원돼 있다. 서명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의 호응도 높았으나 여기에 국민적 여론만 형성된다면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계획은.  
 =감사원이 서울고법의 파면 취소처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낸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우선은 거기에 대처하겠다. 또 한준수 전 연기군수, 윤석양씨, 이지문씨 등 각계의 비리고발자들과 함께 이 법이 제정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할 방침이다.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서명운동도 전개할 생각이다. 4년9개월간의 긴 재판이 2심까지 왔지만 앞으로 도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

지난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실태를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이문옥(55) 전 감사관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해 큰 기쁨을 나타내며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감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돌출행동으로 매도당해온 나의 행동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돼 기쁘다. 용기 있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지난해 터져나온 대형비리 사건을 보며 느낀 점은.  
 =비리가 밖으로 드러날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끝내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만 해왔다. 울타리만 높이며 문제를 가려온 셈이다. 경기도 선거관련 문서를 보며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제대로 보호만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직자가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겨레 95. 2. 22

## 이문옥 전감사관 항소심도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문옥(55) 전 감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18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비밀은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씨가 공개한 자료는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할 여지는 있지만 공무상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 2 2 김창석 기자

한겨레 95. 2. 22

# 社 說

## 알 권리와 공무상 비밀

서울고법의李文玉 전감사관 사건의 대법판결소문을 내린 것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공직자의 비밀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전 감사관(오세빈)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문옥 전감사관이 “재정청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이문옥(55) 전 감사관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해 큰 기쁨을 나타내며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式령은 물론 그인의 성실한 재판관으로서도 비밀의 침해하고 또 이를 지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實情에 따라 판관을 기쁘게 한다.

이런 판결은 이문옥 전감사관의 “공무상 비밀은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잘 보여준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이다.

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했던 것은 권위주의정부에 도전, 열린 사회를 위한 용기 있는 양심선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보투성이 열린 사회를 위한 쾌락으로 칭송될 수는 없다. 이번의 재판부가 이 자료를 부분적 인 유류가 되지 않음은 조사위원

상태의 문서로서, 이와되지 않고 공개될 경우에는 내용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오히려 이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때에는 정확성과 공정성의 유익이 정당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한 연대회의는 28일 조사원이 이문옥(54) 전 감사관에 대한 법원의 복직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상고 취지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이 전 감사관에 대한 법원의 복직판결에 불복해 감사원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올바르게 복무할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과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국론 조작보다 청렴결백하고 정의로워야 할 감사원이 이 전 감사관을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깊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서울고법의 이 전 감사관에 대한 복직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문옥 기자

이문옥 전감사관 항소심도 무죄선고  
 이문옥 전감사관 항소심도 무죄선고  
 이문옥 전감사관 항소심도 무죄선고